

『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11월 30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7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12월 22일

제9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김 해 운

나. 제안이유

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에 조례로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구미시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

○ 구 성

-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함
-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됨.

-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, 구미소방서장, 구미경찰서장, 육군 제5837부대 5대대장, 구미교육청교육장, 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재난 관리책임기관의 장과 재난관리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와 관련이 있는 기관·단체의 장
-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등 재난관리에 경험이 있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
- 기 능
 -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 조정 ·
 - 안전관리계획의 심의 의결
 - 안전문화운동의 추진계획 심의
 -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· 조정
 -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처리
 -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
- 운 영
 - 회의 :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
 - 의결 :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

라. 참고사항

-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정 석 광

-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11조에 조례로 시·군·구안전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그 동안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던 구미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전환하여 제정코자 함이며,

○ 주요내용으로는

-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,
- 위원장 1인과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,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과 재난관리업무의 협의·조정 등의 기능을 가지며,
- 또한 운영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으로,

○ 조례안의 내용이, 상위법령이나 다른 조례와,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